

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



사업개요

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과 중소기업 포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등에 대한 재정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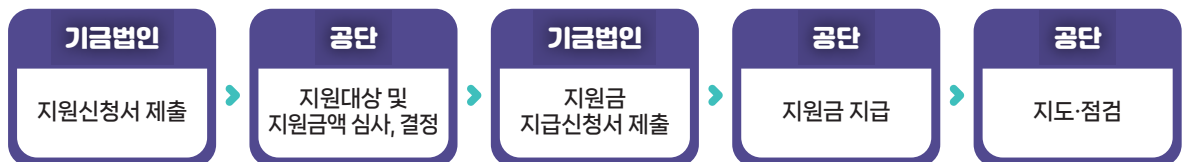


지원대상 및 규모

구분	지원대상 및 사유	지원액 및 한도
사내 근로복지 기금지원	• 대기업(원청)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	지출비용의 50% 범위 내 (매년 2억원 한도)
	•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(원청)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	출연금액의 50% 범위 내 (매년 2억원 한도)
공동 근로복지 기금지원	•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	출연금액의 100% 범위 내 (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) *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
	•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(또는 원청)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	출연금액의 100% 범위 내 (매년 최대 10억원 한도) *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*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,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
	•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	출연금액의 100% 범위 내 (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) *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* 상생협약 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
	*(1인당 지원한도) 기업체 노동비용조사(고용노동부)의 "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"등을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 설정('21~) *(공동기금 매칭 지원을 조정 및 차등화)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을 차등화('22~) → ① 지원배제, ② 신청금액의 50%, ③ 75%, ④ 100% 이내	



지원절차



안내 및 문의

지원금 관련 문의 :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(052-704-7332,7304)

기금설립·운용·제도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※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「복권위원회 복권기금」으로 지원됩니다.